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의안 번호	24-68
----------	-------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백남환, 이한동,
차해영,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마포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및 제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5. 16. ~ 5.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을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책무) ①·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u></p> <p>2. <u>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u></p> <p>3. <u>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 독서환경 개선</u></p> <p>4. <u>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u></p> <p>5. <u>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u></p> <p>6. (생략)</p>	<p>제2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독서문화진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u>따른 독서소외인</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u></p> <p>2. 「<u>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u>」에 따른 <u>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u></p> <p>3.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u>」에 따른 <u>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u></p> <p>4. <u>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u></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③ (생략)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8. (현행 제7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교육정책과 김은채
연 락 처	02-3153-5895